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024. 1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메타버스 내에서 생성된 디지털콘텐츠의 권리 귀속과 이용범위 등의 원칙에 관하여 기본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권리자 보호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 · 경제적 ·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합니다.
- “메타버스산업”이란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나 기기 · 상품 등(이하 “메타버스서비스 등”이라고 합니다)의 개발 · 제작 · 출시 · 판매 · 제공 · 임대 등(이하 “개발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 “메타버스 사업자”란 메타버스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메타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메타버스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디지털콘텐츠”란 메타버스 내에서 개발 · 제작 · 출시 · 판매 · 제공 · 임대 등이 이루어지는 부호 · 문자 · 도형 · 색채 · 음성 · 음향 · 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이용자 생성 콘텐츠”란 디지털콘텐츠 중 이용자가 창작한 디지털콘텐츠를 말합니다.

제3조(기본 원칙)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생성 · 유통 ·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디지털 콘

텐츠를 둘러싼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2장 메타버스 내 이용자 생성 콘텐츠

제4조(권리의 귀속) ①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이용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생성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 부분에 대한 권리는 원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그 이용 범위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메타버스 사업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아이템, 그래픽, 콘텐츠 제작 도구 등 메타버스 시스템 자체를 구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메타버스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제5조(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이용허락)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 스스로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동시에 메타버스서비스 내에서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등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제2항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해관계 주체별로 권리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④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복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형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약관, 팝업고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관한 보증)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약관 등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자의 보증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등에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자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콘텐츠가 타인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메타버스 내에서 게시, 업로드, 링크, 전송 등 기타 모든 방식으로 유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점

제7조(사업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사항)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 제기, 분쟁 등에 관한 면책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메타버스 사업자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을 두는 등 과도한 범위의 면책 조항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8조(메타버스 사업자의 조치)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게시 중단, 삭제, 차단,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방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콘텐츠를 생성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제3장 메타버스 내 디지털 콘텐츠

제9조(메타버스 사업자 제공 요소의 활용에 관한 허락) 메타버스 사업자는 메타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요소(마이크로 콘텐츠) 및 콘텐츠 제작 도구의 활용 범위를 이용자의 성격, 이용자의 영리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메타버스 내 판매 아이템)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생성·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이템이 생성·제작·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자가 현실세계의 물건을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콘텐츠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콘텐츠가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보호대상일 때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등 적절한 권리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아보기 쉽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메타버스 내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메타버스 사업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사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생성·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등 적절한 권리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4장 메타버스 사업자의 조치

제12조(이용약관 등의 구축)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이용약관 등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메타버스 이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지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금지행위시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메타버스서비스 등의 제공 전에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상표권을 비롯한 권리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이용자가 메타버스 서비스 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13조(메타버스 사업자의 조치)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콘텐츠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권리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본 조에 따른 세부 절차는 저작권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메타버스 사업자가 정하는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제14조(분쟁해결) ① 메타버스 사업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다른 메타버스 사업자와 이용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 분쟁 신고 등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② 메타버스 사업자는 제1항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구축·운영하는 대신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